제325회 정례회
2013. 12. 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 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20.(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정지숙 의원 외 6명

나. 제출일자 : 2013년 11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12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2월 10일

-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지숙 의원)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내 문화예술계의 뜻을 모아 2013년 11월 18일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선언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정신을 반영하여,

❍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예술에 대한 권리를 구현하고 문화예술이 만개할 수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 충청북도 도민이 지향해야 할 예술권리 명시

-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문 수록 (안 제2조 및 별표)

○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실천 (안 제3~4조)

- 도의 모든 정책에서 예술권리선언의 정신을 구현
- 도의 예술권리선언의 활용과 실천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조례안은 「헌법」제117조 1항의 예술의 자유를「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헌법상 의무로 주민이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확인·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임.

○ 다만 도민의 예술권리에 관한 조례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언적 내지 프로그램적인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일반화하여 규율하는 것은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본 조례안은 지역 차원에서 예술권리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고취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를 창설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도민의 예술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한다거나,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예술권리 선언 운용 조례안 등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정지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4

발의연월일 : 2013년 11월 29일
발 의 자 : 정지숙, 김희수, 심기보
김봉회, 김형근, 임 현,
김영주 의원

제정이유

○ 충청북도 내 문화예술계의 뜻을 모아 2013년 11월 18일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선언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정신을 반영하여,

○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예술에 대한 권리를 구현하고 문화예술이 만개할 수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 도민이 지향해야 할 예술권리 명시

○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안 제2조 및 별표)

다.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실천 (안 제3~4조)

○ 도의 모든 정책에서 예술권리선언의 정신을 구현

○ 도의 예술권리선언의 활용과 실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협의함.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이 지향하여야 할 예술권리를 밝히고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이하 "예술권리선언"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예술권리선언 실천)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는 도의 모든 정책에서 예술권리선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는 예술권리선언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충청북도 도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에 예술권리선언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의 행사에서 예술권리선언을 낭독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2.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북예술권리선언

Chungbuk Declaration of Rights to Art

예술은 인간과 자연이 표현하는 진선미(眞善美)의 실체이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인간에게 기쁨을 준다. 또한 예술은 예술가와 향유자 모두가 주체이고 주인인 인류의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예술권(藝術權)을 누리면서 언제나 예술적 행복(藝術的 幸福)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비단 물결 금강과 맑은 물결 한수의 충북에서 예술가들은 예술의 영혼을 사른다. 충북의 예술가는 기쁨, 고통, 절망, 희망을 창의적으로 담아내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미학(美學)을 재현하는 고귀한 존재이다. 따라서 충북인과 충북사회는 예술가의 예술행위를 특별하게 존중해야 하며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백두대간의 기상과 청풍명월의 심성과 중원문화(中原文化)의 정신으로 태양의 빛과 생명의 힘을 내는 충북인들은 보편의 정신과 예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 이제, 신명의 심성과 중용의 자세를 가진 충북인들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문화사회 충북(Cultural Society Chungbuk)'을 향한 희망의 노를 젓는다. 거기, 충북예술과 충북사회의 새 역사가 휘황하리라.

1.(충북사회의 예술적 책무) 충북사회는 충북인의 예술권리와 문화가치를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치, 행정, 경제, 교육, 사법 등 여러 영역에서 예술진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충북사회의 예술적 지향) 충북사회와 그 구성원은 예술과 예술인과 예술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충북사회는 공공 예술과 사적 예술을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

3.(충북주민의 예술창조) 예술가와 충북인은 문학예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예술, 다원 및 복합예술 등 다양한 형식을 창작하고 향유하면서 충북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4.(충북주민의 예술적 행복) 충북주민은 예술 창조자이면서 예술 향유자이고 예술을 포함한 문화의 주체일 뿐 아니라 주인이므로 언제나 예술적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5.(충북인들의 예술권) 충북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충북에 머무는 사람이나 충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예술복지와 예술권리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적 기본인권이며 자기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창의적 실체이다.

6.(예술가의 예술권리와 표현의 자유) 예술가들은 예술적 목적을 가지는 한 어떠한 표현도 할 수 있으며 예술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예술가는 예술행위로 인한 부당한 박해와 압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7.(예술가의 책무) 예술가는 다른 작품을 표절하거나 유사작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예술가는 예술윤리를 지키면서 다른 예술가들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정직한 예술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예술 이외의 다른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8.(예술가와 사회) 예술가는 예술행위를 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며 예술을 통하여 관용적인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문화민주주의와 예술적 평등을 포함하여 건강한 예술생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9.(예술재정의 투명)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공적 지원을 받았거나 공공예술을 할 때 그리고 사적 예술행위를 할 때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10.(예술적 차별 금지) 충북사회는 인종, 민족, 성, 종교, 사상, 지역, 빈부, 계급, 학력 등에 의하여 예술적 차별을 받지 않으며 예술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특히 세계화의 시대정신에 맞추어 열린 민족, 국가, 사회를 지향하며 문화다양성의 기조를 지켜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